

倫理規約

1965年 10月23日 創立 總會制定
1973年 3月24日 第一回 臨時總會에서 改正

第1條 建築士는 委囑者의 信任받는 代理人이며 自己에게 맡겨진 責任과 任務를 良心과 誠意로서 遂行한다.

第2條 建築士는 委囑者에 関하여 業務上의 秘密을 嚴守한다.

第3條 建築士는 委囑의 対象이 되는 建築物이 純粹한 建築文化와 社會福祉에 合致되지 않는다고 認定되거나 委囑者의 要求가 與件과 要素로 보아 建築士들 自体의 權益을 損傷시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業務의 委囑을 拒否한다.

第4條 建築士는 委囑에 関한 報酬以外에 어떠한 金品도 받지 않는다.

第5條 建築士는 委囑者에게 事前에 報酬額 制定의 原則과 設計委囑에 따르는 諸條件 또는 規約 등을 啓蒙 熟知시켜야 할 것이며 報酬의 割引 其他 不當한 手段으로 다른 建築士와 競爭하지 아니한다.

第6條 建築士는 專門家로서 委囑者와 都給業者 및 納入業者間의 모든 問題를 公平하게 實際的으로 判定한다.

第7條 建築士는 다른 建築士와 委囑者間에 交渉이 相當히 進行된 것을 알면서 그 委囑者에게 業務委囑의 交渉 또는 그의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다.

第8條 建築士는 이미 다른 建築士에 委囑된 일의 實施 또는 完成의 付託을 委囑者로부터 받았을 경우 當刻建築士와 委囑者 사이의 關係가 解消

되었음이 建築士 相互間 또는 協會의 確認이 없이는 委囑을 引受아니한다.

第9條 懸賞設計에 依한 實施設計에 있어 最高의 賞을 받은 以外의 建築士는 그 委囑을 拒否한다.

第10條 다른 建築士 또는 建築技術者를 雇傭하고 있는 建築士는 自己에게 委囑된 일에 對한 責任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被雇傭者의 技術 向上을 可能케 하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11條 建築士는 建築材料 또는 建築構造 등의 廣告에 있어서 建築士의 名譽를 毀損시킬 證明書를 發付하지 아니한다.

第12條 建築士는 自己의 事業 및 業績 또는 다른 建築士에 関하여 虛偽宣傳을 하지 아니한다.

第13條 事務所 開設을 登錄한 建築士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職을 兼職하지 아니한다.

- ① 公務員(教育公務員을 포함한다.)
- ② 政府投資機關의 任職員
- ③ 私立學校法에 依한 前임강사급 이상의 敎職者
- ④ 法人 또는 個人企業체의 常任 任員(代表者는 제의 「建築上業務를 主業務로 하는 경우에 한함」한다) 또는 직원
- ⑤ 前 各항에 준하는 職

第14條 本倫理規約을 實施하기 爲하여 倫理委員會를 組織한다.

第15條 建築士는 倫理委員會의 規程한 바에 따라 倫理委員會의 決定에 服從한다.

倫理委員會 規程

1965年 9月 創立總會制定
1973年 3月24日 第1回 臨時總會에서 改正

第1條(目的)本規程은 大韓建築士協會 倫理規約에 비추어 建築士의 威信과 權益을 保全하고 業務 遂行에 있어서 建築士의 誠實성과 信義를 높이고 아

울러 建築士의 不美한 行動과 犯法行爲를 未然에 防止하며 만일의 경우에는 公平正大히 自家肅正을 斷行하므로서 國家社會로부터 建築士의 權威와 信

任을 維持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構成) 本倫理委員會(以下 本委員會라 함)에는 7名의 委員을 둔다.

第3條 (委員選任) 委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第4條 (委員長) 本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을 두되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5條 (議決) 倫理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 3分の 2의 贊成으로 議決된다.

第6條 (委員會 參席禁止) 委員이 本委員會 審議對象의 事件에 關聯되었을 때에는 그 委員은 當該 事件審議에 參與할 수 없다.

第7條 (委員資格喪失) 本委員會 委員으로서 懲戒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 懲戒의 輕重을 莫論하고 委員資格을 喪失한다.

第8條 (委員補選) 前條에 따라 委員中 缺員이 생길 경우에는 委員長의 提議에 따라 理事會가 이를 補選한다.

第9條 (審議의 發議) 審議의 發議는 다음 경우에 發生한다.

- ① 委員의 發議가 있을 때.
- ② 正會員 7名以上の 連署要請이 있을 때.
- ③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 ④ 支部幹事會의 議決을 거쳐 支部長의 講求가 있을 때.
- ⑤ 關係官廳의 通告가 있을 때.

第10條 (委員會 召集) ① 委員長은 前條의 規程에 의한 審議의 發議를 받았을 때는 10日 以內에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事件의 審議上 書類의 검토 또는 事前 調査가 필요할 경우, 書類의 검토 또는 事件의 調査를 요하는 기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委員長은 前項 단서 規程에 의한 事件의 調査를 理事會에 요청할 수 있다.

第11條 (審議대상의 의견청취) 委員長은 審議對象이 된 建築士를 委員會에 參席시켜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正當한 理由없이 不參할 때는 그 意見을 듣지 않을 수 있다.

第12條 (懲戒区分) ① 懲戒에 對한 決議는 다음 各項의 行爲에 適用하되 그 決定은 勸告, 譴責, 資格停止 및 除名의 4種으로 한다.

- ② 勸告 또는 譴責에 該當하는 行爲
 - 一. 委囑者에 對한 不誠實한 行爲
 - 二. 報酬額의 不當한 割引

三. 다른 建築士에 對한 誹謗行爲

四. 建築士間의 不美한 行爲 및 다른 技術者와 의 不當한 紛爭行爲.

五. 規約 第 2, 3, 4, 5, 6, 11 및 第 12條에 該當하는 行爲

六. 正會員 會費를 3개월以上 滯納하였을 때

③ 期限付 資格停止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一. 個人의 利益을 爲하여 다른 建築士의 權益을 褫奪하였다고 認定되는 行爲.

二. 規約 第 7, 8, 9條에 該當하는 行爲

三. 특히 비열한 方法에 依한 다른 建築士와 의 競爭行爲

四. 3回以上の 譴責을 받았을 경우

五. 建築士法令에 依하여 建築士資格 또는 事務所 開設의 期限付 停止處分을 받았을 때

六. 正會員 會費를 6個月以上 滯納하였을 때

七. 業務수탁을 目的으로 事務所를 2개소 이상 設하고 業務를 하는 行爲

八. 建築士事務所의 經營權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行爲

九. 他人이 作成한 設計圖書에 명의를 내여하는 行爲

④ 除名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一. 建築士로서 自己나 다른 建築士의 權益이나 名譽를 極히 損傷시켰다고 認定되는 行爲

二. 社會的으로 物의를 일으키고 또 그 制裁를 받았을 경우

三. 5回以上 譴責을 받았을 경우

四. 3回以上 資格停止處分을 받았을 경우

五. 建築士法令에 依하여 建築士의 免許取消 또는 事務所開設取消을 받았을 때

六. 1年以上 正會員 會費를 滯納時

七. 倫理規約 第13條에 해당하는 行爲.

第13條 (決議事項의 報告) 委員會에서 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5日以內에 委員長은 會長에게 그 決議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14條 (受諾여부 議決) ① 會長은 前條의 報告를 받았을 때 5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 倫理委員會 決議事項에 對한 受諾與否를 議決한다.

② 理事會는 倫理委員長을 參席시켜 意見의 陳述을 받아야 한다.

條15條 (受諾거부) ① 理事會는 倫理委員會의 決定事項의 受諾與否만 決定하며 決定事項의 內容變

更은 할 수 없다.

委員長 名義로 宣告함으로써 發効한다.

② 理事會가 受諾拒否할 때는 即刻 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하여야 한다

附 則

第16條 (再審請求) 懲戒決定을 받은 建築士는 懲戒通告를 받은 후 5日以內에 直接 理事會에 對하여 1회에 限한 再審請求를 할 수 있다.
第17條 (徵戒發効) 懲戒는 理事會에서 議決된 後

第1條 (規程의 發効) 本規程은 總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發効한다.
第2條 (施行日) 本規程은 總會에서 議決된 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編輯後記 ■

☆表紙 編輯과 촬영을 위해 每日 바쁜 業務中에도 苦心하시고 또 研究하시는 安瑛培 편찬위원장님의 勞苦에 감사드리며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元大淵 技師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改正建築法の 發効日인 7月1日을 앞두고 3月號의 改正建築法 解說의 연재와 더불어 이번 號에는 改正된 部分에 대한 問題點을 尹定燮 李文輔 教授께서 條文別로 다루어 주셔서 會員 業務活動에 많은 參考가 되리라 봅니다.

☆ 海外建築 소개를 위한 資料빈곤으로 동분서주 하던 중 美國大使館에서 建築誌 FORUM, 2月號를 대여하여 特輯記事인 Philip Johnson의 作品을 발췌소개합니다. 本冊字를 제공해 준 金天植 公報擔當에게 감사드립니다.

☆ 會員作品의 精選을 위해선 全國會員들의 많은 作品 投稿가 절실한 차제에 水原近郊의 亞州大學私宅과 서울 어린이 大公園안의 리틀·엔젤스 芸術學校 計劃을 편찬위원회에서 選擇게재 합니다. 앞으로 건축사의 質的인 向上을 위해 全國會員의 作品게재에 대한 보다 積極적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四月號는 製紙會社의 모조지生産의 중단으로 부득히 紙質을 바꾸어 印刷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月刊 **建築士** 4月號

通卷 第54號 1973年 4月30日 發行

發行人兼 姜 大 雄
編 輯 人

登錄番號: 第 라-1251 号

登錄日字: 1967年 3月 23日

登錄變更: 1972年 4月 12日

發 行 所: 大韓 建築士 協會
서울 特別市中區太平路1街60-17
(太塚빌딩 5층)

☎ 73) 9491, 9492, 74) 1045

印刷所: 高星文化印刷株式會社
(非 賣 品)